

사용허가 일반조건

1.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10/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 금고에 귀속한다.
4. 낙찰자는 공고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5. 계약문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계약서, 사용허가 일반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6. 계약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7. 시설물의 구조변경은 불가능하고 내부시설은 기존시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추가시설을 할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마포주민편익시설)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완료 후 마포구시설관리공단(마포주민편익시설)에게 기부체납하고 여기에 소요 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시설에 대한 권리주장이나 소요된 비용요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상품의 가격은 일반시중보다 고가 판매는 금하며 불량식품의 판매 및 승인 가격위반 등 부당한 사항이 지적되었을 때 마포구시설관리공단(마포주민편익 시설)의 일방적인 사용허가 취소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한다.

9. 본 시설물 사용자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상주거주는 일체 불허한다.
10. 본 시설물 사용자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임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시설물을 사용할 때 어떠한 사유발생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단, 불의의 사고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주일 이상 영업을 못할 경우에는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만큼 무상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계약자(낙찰자)은 자판기 운영에 따른 전기료, 가스요금,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납부와 시설물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며 또한, 시설물 관리자로서 청소 등의 선의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유지관리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마포주민편익시설)이 한다.
13. 계약자(낙찰자)은 자판기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건의·개선사항이나 민원발생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마포주민편익시설)의 입장에 서서 책임을 갖고 신속·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4. 유해식품 등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체 사용을 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자(낙찰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 영업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잘못에 대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마포주민편익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 시설물 사용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자가 위 조건을 미 준수 시 또는 불응 시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용허가 특수조건

1. 마포주민편익시설 내 자판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사용자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2. (영업시간) ① 사용자는 본 편익시설의 개관시간(06:00~22:00) 내에서 영업할 수 있다.
② 07:00~22:00까지 개점을 원칙으로 하며, 영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편익시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휴점일) ① 다음에 정한 날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영업일 연장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정기휴관일
 - 법정공휴일 등에 편익시설에서 임시 휴관을 실시하는 경우② 휴관일 변동 시에는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불가피하게 휴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편익시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이 경우 최소한 5일전에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4. (판매품목 및 가격 등)
① 판매품목 : 보건당국에 제조허가를 득하고 생산자가 명확한 제품(음료, 커피)
 -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판매품목 변경 시에는 편익시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음료, 커피 외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 유통과정 및 보관상 위생적 취급·관리가 미흡할 경우 또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쉽게 변질되거나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판매 불가③ 판매가격은 시중가격(소비자가격)이하로 판매하여야 하며 가격은 외부 게시하여야 한다.

- ④ 본 편익시설의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판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이용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즉시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 ⑥ 위생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상품의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판기에서 취급한 제품으로 인한 식품위생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인(자판기 운영자)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자판기 운영)

- ① 자판기의 운영은 입찰에 낙찰된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 한다.
- ② 사용자는 편익시설이 주민을 위한 복합시설물임을 감안하여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 및 친절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자판기는 본 편익시설의 1층 내지 4층에 층별 2대(커피 1, 음료 1)만 운영할 수 있다.
- ④ 자판기 운영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자판기 운영자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
 - 종이컵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자판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6. ① (공공요금 등) 자판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 제세공과금 관련 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공공요금 적정부과를 위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때 설치한 계량기는 계약 종료 후 마포구시설관리공단(마포주민편익시설)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